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

의안 번호

제 출 일 : 2024. 3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○ 남양주시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

2. 관계법령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2조
- 「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3. 주요내용

-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
- 동의대상: 5명(변호사1, 기술사1, 건축사1, 煎공무원2)

연번	성명	거주지	주요경력	지원 자격
1	김운의 (71년생, 52세)	남양주시 다산동	○ 현)법무법인 다온 소속 변호사 ○ 전)법무법인 대아 소속 변호사	변호사
2	정기철 (53년생, 70세)	남양주시 화도읍	○ 현)케이에스엠기술 부사장 ○ 전)서울특별시 공무원(사무관)	기술사 (토목)
3	조성혁 (70년생, 53세)	남양주시 호평동	○ 현)풍양SD 건축사사무소 대표 ○ 전)성도엔지니어링 대표이사	건축사
4	지인수 (63년생, 60세)	경기도 고양시	○ 전)헌법재판소 공무원(법원부이사관)	前공무원
5	황진연 (57년생, 66세)	서울시 강남구	○ 전)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감사담당관 ○ 전)감사원 공무원(감사관)	前공무원

[붙임]

관계법령

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○ 제32조(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□ 남양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제4조(구성) ① 옴부즈만은 시장 소속하에 두며,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.
 - ② 옴부즈만은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<u>다음 각 호의 어느</u>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
 - 1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 - 2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 - 3.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 - 4. 건축사·세무사·공인회계사·기술사·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 - 5.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